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사회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발굴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실제 거주하는 고립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립청년 발굴·지원 전달체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및 소요 재원
4. 고립청년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고립청년의 규모, 생활실태, 고립 원인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발굴 및 지원 신청) ①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고립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립청년 본인, 그 가족 또는 보호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2.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3. 맞춤형 일자리 등 자립 지원 연계
4.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참여 지원
5.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제도의 연계)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발굴되거나 지원을 신청한 고립청년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고립청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

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립청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